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5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 김도읍 • 권영세 • 인요한

조지연・이성권・구자근

신동욱 • 장동혁 • 김석기

김정재 · 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 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

임(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
-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3.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②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u>해당하는</u>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 <신 설></u>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u><신 설></u>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u><신 설></u>	3.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른 19세 이상의 사람